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112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이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직업체험 등 일자리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위기 십대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나. 위기 십대여성의 교육과 자립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13(신림동)
- 시설규모 : 550.2m<sup>2</sup>(지상 1~5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교실2, 작업장2, 공연장, 일시보호실, 사무실 등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025. 1. 12. ~ 2028. 1. 1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소요예산 : 647백만원('24년 기준)
- 위탁사무
  - 학력취득을 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 및 검정고시 수업 운영
  - 기술습득 및 직업훈련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인턴활동 및 취업연계
  - 심리·정서 프로그램, 찾아가는 거리학교, 직업체험 축제 등

####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는 가출 및 성매매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진로교육, 일자리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자립준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인사, 예산·회계, 재산·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최주윤 (☎2133-5048)